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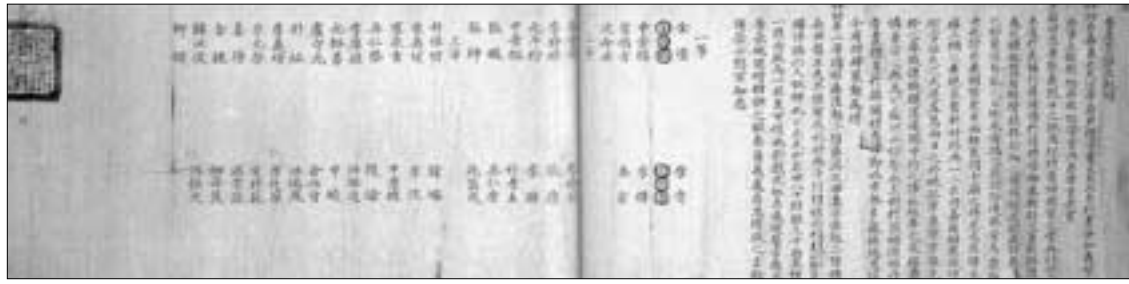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②



최 중 규
포천영유외 회장

청흥군 이증노 정사공신교서(靑興君 李重老 靖社功臣敎書)



지난 1993년 11월 15일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보물 제1174호로 지정된 청수면 추동리 433번지 소재(경기도박물관 보관) 이재충 소유 1축 세로 39.5cm X 가로 236.1cm 규격의 자지에 생견을 배제한 재질로 된 청흥군 이증노 정사공신교서.

지난 1993년 11월 15일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보물 제1174호로 지정된 청수면 추동리 433번지 소재(경기도박물관 보관) 이재충 소유 1축 세로 39.5cm X 가로 236.1cm 규격의 자지에 생견을 배제한 재질로 된 청흥군 이증노 정사공신교서. 이 교서는 1993년 11월 15일 보물 제1174호(명칭: 청흥군 이증노 정사공신교서)로 지정되었는데 정사공신교서로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가 극히 드문 매우 귀중한 자료다. 청수면 추동리에 거주하는 이증노의 후손인 이재충씨가 소중히 보관하여 오다 현재는 경기도박물관에서 전시·보관하고 있다. 정사공신(靖社功臣)은 광해군을 폐출하고 인조를 옹립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겐 주었던 훈호(勳號)이다. 이 분충찬모임기 정사공신교서(肅忠贊謨立記 靖社功臣敎書)는

가외대부 강화부윤 증자헌대부 병조판서 겸 저의금부사오위도총부 도총관 청흥군 이증노에게 책훈된 것이다. 이증노(1577<선조10>~ 1624<인조2>)는 개국공신인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의 후손으로 16세에 무과에 급제하고 이듬해 선전관을 역임하였으며, 1621년(광해군 13) 이천부사(伊川府使)가 되었다. 1623년(인조1) 김류(金)·이귀(李貴) 등과 인조반정(仁祖反正)에 참여하여 정사공신 2등에 녹훈(錄勳)되었으며 청흥군에 봉군되었다. 1624년(인조2) 이괄(李适)의 난 때에 경기·강원 양도의 방어사(防禦使)가 되어 이성부(李聖輔)와 함께 예성강 상류인 마탄(馬灘)에서 순절하였다. 부인은 정인백(鄭珍伯)의 딸이다.

이 교서는 1625년(인조 3) 4월에 인조반정에 참여한 훈신에게 발급된 것으로서 전체 크기는 가로 236.1cm, 세로 39.5cm이며, 교서의 크기는 가로 200cm, 세로 37.3cm이다. 두루마리(卷子本) 형식의 필사본(筆寫本) 1축(軸)으로 저지(楮紙) 바탕에 생견(生絹)으로 배접되어 있으며 녹권(錄券)의 전·후·상·하부 일부에 남색(藍色)으로 염색된 천을 입혔고 녹권 끝에는 목재축(木材軸)이 달려 있어 녹권을 말아 보관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사주(四周)에는 주선(朱線)으로 둘러 있으며 상하로 2.5cm간격으로 80개의 주선안에 목서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녹권 이면 한 편에 한 인급(韓仁及; 1583~1644, 인조반정 후 병조좌

랑·개성부유수 역임) 제(製), 임광(任; 1579~1644, 한성부윤 역임) 서(書)란 두줄의 글이 쓰여 있어 이 교서의 제작자와 필서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말미의 인기(印記)는 시명지보(施命之寶)이다. 녹권의 내용은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단락은 이 교서를 내리게 된 경유를 밝힌 후, 이증노의 충성심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신하로서 국가와 국왕에 대한 서약을 다짐하고 있다. 둘째 단락에는 공신에 대한 포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셋째 단락에는 정사공신 1등에서 3등까지의 명단을 열거하고 있는데 1등은 김류(金) 등 9명, 2등은 이증노 등 14명, 3등은 박유명(朴惟明) 등 27명으로 총 50명의 공신을 표기하였다.

●●●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⑤

경찰은 공적 안전질서 교란제거 任務

召喚狀과 法院이 행하는 拘束令狀·押收搜索令狀·感情留置狀은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의 성질을 가지나, 수사기관이 행하는 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감정인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은 당해 기관에 대한 허가장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의무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영장의 집행여부가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진다. 다만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인신구속에 대한 허가의 신중과 남용방지의 견지에서 일단 영장 발부를 받은 연후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刑事訴訟法은 令狀의 방식에 관해서 강제처분의 대상·시간 및 장소를 특정하도록 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일반영장은 금지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는 영장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제한한 것은 법률전문가에 의하여 합법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검사는 수사의 주체자이며 공소유지의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구속시키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공판단계에서의 영장은 법원 스스로 발부한다. 現行犯의 逮捕 형사소송법 제212조와 緊急逮捕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는 체포영장을 요하지 않고 사후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으면 족하다. 긴급상황 아래에서 사전영장을 발부 받으려고 시간을 지체해서는 수사목적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대물적 강제처분에도 영장주의의 예외가 널리 인정된다. 즉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법원에 의한 검증의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 없다. 任意提出物을 押收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의 경우에도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만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면 체포의 경우에는 즉시 석방해야 하고, 압수의 경우에는 즉시 환부해야 한다. 이러한 現行法上 令狀制度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憲法에 規定된 性質이 아니다. 헌법 제12조 3항은 檢察의地位를 헌법적으로 격상시킨 세계적으로 유일한 헌법상의 규정이라 하겠다. 원래 憲法은 국가의 基本法이고 法官이 인권보장의 보루라는 점에서 볼 때,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표현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절차문제라 할 수 있는 '검사의 청구로'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주장에 憲法的 封鎖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라는 헌법상규정은 이를 삭제하고 영장청구권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에게 양립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실제적으로 公判階次에서는 證據能力이 制限되는 司法警察官이 작성한 拘束의 疏明資料가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검사의 구속영장청구여부의 심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종 조서에 의한 書面審査이고, 법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원에 의한 영장청구의 실질화와 경찰내부의 자체 심사강화 등을 통해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독일·일본 등에서도 같이 법원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심사함에 있어 被疑者를 直接 詢問하는 제도를 둘 것인가의 여부가 입법론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令狀請求에 대한 實質的 審査라는 견지에서 법원에게 被疑者 詢問權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법원청사와 경찰관서의 거리, 수사경찰관의 인력부족 등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다면 하더라도 구속영장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의 폐단이라는 점을



노 영 민
포천경찰서

고려할 때, 法官에게 영장심사를 위한 被疑者 詢問權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9세기 自由主義國家觀에서는 警察이 국가 내외의 적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최상의 임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밖에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타 모든 생활영역에서 국가에 의한 형성이 또한 중요한 국가임무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새로운 임무는 현대의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학기술은 새로운 위험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警察의 概念은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를 위한 소극적 작용에 한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조 2항에 국민주권주의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2항에서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무가 규정되어 있어 경찰개념의 소극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경찰개념의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實質的 意味의 警察概念은 국가활동의 내용상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警察이란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침해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적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교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음호에 계속>

자/유/기/고



이 중 희
포천시선거관리위원
시인, 본지 자문위원

아내와 어머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40년 21세에 어머니의 친정 오빠였던 독일의 작센공의 차남인 알바르트 공과 결혼했다. 이 동갑내기 부부는 오늘날에도 영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정열적인 연애를 하여 맺어졌고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국왕 중 64년이라는 가장 긴 기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은 고집이 매우 세고 성격은 대범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이따금씩 충돌했다. 언젠가 두사람은 사소한 일로 부부 싸움을 하다가 화가 치민 남편 알바르트공은 큰소리를 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가 버렸다. 얼마후 빅토리아 여왕은 남편 방의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여왕입니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 여왕은 다시 한번 노크했다. "누구요?" "여왕입니다." 또 반응이 없다. 이렇게 몇 번이나 똑같은 문답이 오고 갔다. 몇 시간이 지난후 여왕은 남편의 방을 다시 노크했다. "누구요?"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서 방문이 열렸다. 결국 알바르트공은 자기아내인 빅토리아 여왕에게 마음속으로 한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었다. 그

것은 영국의 왕이기에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달라는 요구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왕'이 노크 할 때는 안 열어주던 문을 '아내'가 노크 할 때는 즉시 열어 주었던 것이었다. 여왕은 그때서야 비로서 남편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으며 그때부터 알바르트공에 대해서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정성을 다해 충실히 이행했던 것이다. 알바르트공은 교양도 있었고 실력도 대단했다. 그의 의견이 아내인 빅토리아 여왕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됐고 많은 업적을 남길수 있었다. 영국 최초의 만국 박람회도 알바르트공의 정책 기획 작품이었다. 영국에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왔고 영국의 국력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번성기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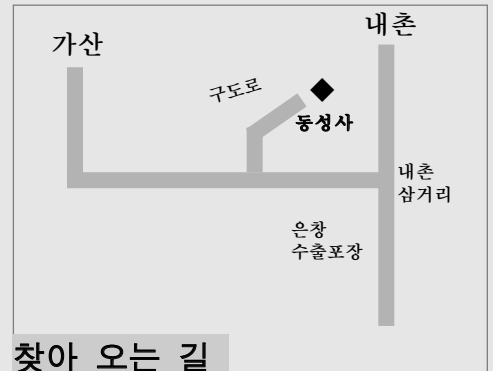
가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시대'라고 부르며 까지 된 것은 여왕과 알바르트공이 한마음이되어 정치 외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을 수립했기 때문이었으며, 그 비결은 여왕이 여왕이기 이전에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이다. 남편 평등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 남자의 아내, 자식의 어머니로서도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참고 견딜줄 알아야 한다. 고사리 우리나라는 여권 신장이 지나쳐 아내와 어머니들이 이기적, 자기본위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혼율은 높아가고 따뜻한 가정은 해체되고, 차디찬 가족만 많아지고 있다. '아내'는 '아내' 즉 집안의 태양이라는 뜻인데, 안타까운 일이다.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 전문 동성사



생·산·품·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 윤 이 용